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9
----------	-----

2019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5일 이경선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경선 의원)

1. 제안이유

- 가.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의료

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임. 이에 시립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나.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인 바,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 개정안은 강북삼성병원 고(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은평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상해 사건 등 의료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안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응급실 주취자 난동이 나 간호사 등에 대한 성희롱,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병원내 진료방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왔음.

※ 아래의 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사례임

사건내용	선고내용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300만원
간호사에 대한 욕설, 폭행	벌금 20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100만원
의사 흉기위협 및 폭행(전치 4주)	징역 8개월
응급실 간호사 협박으로 징역8월 선고 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위협 및 협박	징역 2년6개월, 벌금 5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니가 의사냐”, “경찰 불러라”등으로 위협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 및 폭행	징역 4개월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벌금 300만원

출처 : “경찰이 와도 의사에 폭언·발길질” 응급실 폭행 공포 중앙일보 2018년 7월10일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제5조의2(아래 표 참조)를 신설하는 안으로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에게 책무로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중 1개 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안임.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 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 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보안요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 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다. 세부사항 검토

- 시민건강국은 총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 중에 있음. 각 병원은 병원별 특성에 맞추어 보안요원 등은 운영중에 있음. 대부분의 병원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요건은 기존에 갖추고 있거나 갖추 예정이라고 함.

【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조치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병원명	위 치	비상연락시설 ¹⁾		비상대피시설 ²⁾		보안인력 배치 ³⁾		기타 ⁴⁾		비 고 (설치장소)
			설치수	비용	설치수	비용	인원	비용	설치수	비용	
기존 설치	어린이	서초구	-	-	-	-	4	185,700	-	-	- 청경 4
	서 북	은평구	-	-	7	7,000	12	410,000	-	-	- 진료실 - 청경 4, 공무원 경비 9
	은 평	은평구	-	-	2	580	3	207,000	1식	8,485	- 진료실 / 청경 3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 송수신기 82개
	서울의료원 (분원포함)	중랑구	2	616	-	-	18	954,000	-	-	- 응급실
	보라매	동작구	-	-	54	개설 시 설치	25	1,221,419	9	11,700	- 진료실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경광등 포함) * 응급실 내 경찰관 1명 상주 ¹⁾
	동 부	동대문구	-	-	1	2,200	7	326,882	1	120	- 진료실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 * 응급실 내 경찰관 1명 상주 ¹⁾
	북 부	중랑구	-	-	-	-	4	156,278	-	-	
	서남병원	양천구	-	-	-	-	13	574,934	-	-	
	장애인지과	성동구	-	-	-	-	-	-	-	-	
	축령정신	남양주시	-	-	1	개설 시 설치	-	-	2	290	- 진료실 - 기타설치 : 외래진료실 가스총 비치
고양정신	고양시	-	-	4	개설 시 설치	2	45,000	-	-		
신규 설치 예정	동 부	동대문구	-	-	-	-	-	-	2	600	- 기타설치 : 내부 비상벨(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백암정신	용인시	7	500	6	12,000	-	-	-	-	- 비상연락시설 : 진료실(편의점 방법용 비상벨 형태로 설치(단말기 설치, 한국통신 서비스) - 비상대피시설 : 벽돌시공 벽면에 비상문 설치 (진료실4/방사선실1/임상병리실1)

- 주 : 1)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비상연락시설 설치 병원은 설치당시 설치비용 기재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 설치 병원은 설치당시 설치비용 기재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 연간 소요 비용(19년 예산액)
 4) 기타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 구체적인 시설내용과 설치당시 비용

1)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병원 업무 협력으로 경찰관 배치

-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로의 직접연결은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만이 갖추고 있는 상황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점(서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인 은평병원 등 각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직영병원인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을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 진료가 주된 은평병원 보다 서북병원에 더 많은 안전관련 인원이 배치되는 점 등은 집행부가 자원배분에 있어 물리적인 크기만을 고려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
- 백암정신병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시립병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과 비일관성, 자원(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진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의견

- 최근 의료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발의된 본 개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국회에도 유사한 입법이 있고²⁾ 조례로 이를 규정하지 않더

2) 김승희 의원(의안번호 18116)과 같은 경우 의료안전기금의 설치와 이를 통한 안전시설의 설치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라도 안전조치는 적절하게 가능한 점, 국회에서 법률이 제개정 되는 경우 조례의 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를 동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5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1명)

찬 성 자 : 한기영, 이병도, 오한아, 최선,
강동길, 송아량, 신정호, 문병훈,
임종국, 권수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의료
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임.

이에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偽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나.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u> <u>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u> <u>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u> <p><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제2항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1. 비상연락시설 2. 비상대피시설 3. 보안요원)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진료안전조치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안 제5조의2제2항)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2019.1.16. 기준일 이후 서울특별시립병원 수와 진료안전조치 현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진료안전조치는 비상연락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3개 조치로 보며, 서울특별시립병원 1개소당 3개의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으로 가정함(단, 3개의 진료안전조치 중 기 조치된 곳은 비용추계에서 제외)
-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은 설치비 및 배치비(인건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물가상승률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산출함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진료안전조치 실시 개소수는 해당부서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안전조치 현황’자료를 근거로 3개의 진료안전조치별(비상연락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보안요원 배치)로 산출함
 - ※ 진료안전조치별 기 조치 개소수 : 비상연락시설 2개소 , 비상대피시설 7개소, 보안요원 배치 9개소 (총 12개소임)
- 진료안전조치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립병원 기능보강 사업」 준용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비용 준용하여 추계
 - ※ 진료안전조치별 산출단가 : 비상연락시설 124천원/개당 , 비상대피시설 1,361천원/개당, 보안인력배치 연46,377천원/1명당
- 서울특별시립병원 12개소 간 규모의 차이가 있어, 미 조치 된 곳은 비상연락시설 10개, 비상대피시설 10개, 보안인력배치 10명 각 평균치로 가정하여 산출

- 총 진료안전조치 비용은 추계기간 중 연간 균등 분할 발생하는 방법으로 추계하되, 보안요원 배치 비용은 매해 동일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7,037,000천원(연평균1,407,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	-	-	-	-	-	-	-
세입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조례안 제5조의 2제2항)	비상연락 시설(제1호)	2,480	2,480	2,480	2,480	2,480	2,480	12,400
		비상대피 시설(제2호)	13,610	13,610	13,610	13,610	13,610	13,610	68,050
		보안요원(제3호)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6,956,550
		소계(b)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7,037,000
□ 총 비용(b-a)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7,037,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시립병원 내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 조치 실시(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인력 배치)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비상연락시설 총 비용+비상대피시설 총 비용+ $\sum_{i=1}^5$ (연간보안인력 배치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비상연락시설 설치 총 비용(≒ 12,400천원)
 - = 평균단가 × 기관당 평균 10개 설치 × 미설치 개소수
 - = 124천원 × 10개 × 10개소
 - = 12,400천원
- 비상대피시설 설치 총 비용(≒ 68,050천원)
 - = 평균단가 × 기관당 평균 10개 설치 × 미설치 개소수
 - = 1,361천원 × 10개 × 5개소
 - = 68,050천원
- 연간 보안인력 배치 비용(≒ 1,391,310천원)
 - 연간 보안인력 배치 비용 = 평균단가 × 평균 10명 배치 × 미배치 개소수
 - = 46,377천원/년 × 10명 × 3개소
 - = 1,391,310천원

※ 서울특별시립병원(12개소)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조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인력 배치	비고
설치	2	7	9	경찰서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비상벨 설치 4개소
미설치	10	5	3	

자료 :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019)